

제 60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.
상법 제 365 조 및 당사 정관 제 17 조에 의거 제 60 기 정기주주총회를
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9 년 3 월 22 일 (금) 오전 10 시

2. 장 소 :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 (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)

3. 회의의 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나. 의결사항

제 1 호 의안 : 제 60 기 재무제표 (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(1 주당 배당금 : 보통주 1,800 원)

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제 3 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 (상근감사 1 명)

제 4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(60 기 25 억원 → 61 기 10 억원)

제 5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(60 기 2 억원 → 61 기 1 억원)

※ 단, 제 1 호 의안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 시
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됨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
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
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
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
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신분증

※ 금번 주주총회 기념품은 준비하지 않습니다. 주주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. 끝.

2019 년 3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
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
대표이사 남형근 (직인생략)

□ 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6조 주식의 종류와 주권의 종류</p> <p>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, <u>주권의 종류는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.</u></p>	<p>제 6 조 주식의 종류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</p> <p>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, <u>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u></p>	<p>- `19년부터 주식 등의 전자등록이 의무화 될 예정임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</p> <p>-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무화 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신설</p>
<p>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</p> <p>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<u>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</u></p>	<p>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</p> <p>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<u>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</u></p>	<p>-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식사무 처리 변경내용 반영</p>
<p>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</p> <p>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</p>	<p>제12조 <삭제></p>	<p>- 주식이 전자등록 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</p>
<p>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</p> <p>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<u>3개월</u>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~(생략)</p>	<p>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</p> <p>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<u>3개월</u>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~(생략)</p>	<p>- 표현수정</p>
<p><신설></p>	<p>제 15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</p> <p>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p>	<p>-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전자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신설</p>
<p>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</p> <p>제11조,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p>	<p>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</p> <p>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p>	<p>- 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</p>
<p>제 17조 소집시기</p> <p>②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<u>3월 이내</u>~(생략)</p>	<p>제 17조 소집시기</p> <p>②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<u>3개월 이내</u>~(생략)</p>	<p>- 표현수정</p>
<p><신설></p>	<p>부 칙(2019. 3. 22)</p> <p>이 정관은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, 제11조, 제12조,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「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시행령 시행일 단서</p>

□ 제 3 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
[감사 후보자]

구 분	출생년월 추천인	약 력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비고 임기
김선용	1948.02	現) 선명회계법인 고문 前) 하이젠모터(주) 부사장 충정회계법인 전무 LH공사 감사위원회 위원장	-	-	신규선임
	이사회				3년